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33호
----------	---------

제출년월일 2024. 10. .
제 출 자 권 민 찬 의원

1. 제안이유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장기 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 격려를 위하여 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자동 소멸이 아닌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고자 함.
- 나. 의회 공무원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시에도 퇴직 이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을 때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제4항)
- 나.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안 제12조제7항)
- 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3. 7. 18.자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
-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24. 7. 2.자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2) 관련부서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6조의2에 따른**”를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의**”로,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를 “**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특별휴가) ① ~ ③ (생략)</p> <p>④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⑤ · ⑥ (생략)</p> <p>⑦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12조 (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u>5</u>
	자녀	<u>1</u>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본인	<u>20</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1</u>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u>5일</u>
	자녀	<u>1일</u>
출산	배우자	<u>10일</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u>20일</u>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5일</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일</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일</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3일</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일</u>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u>1일</u>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2.2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